

인권 자료실	
문서번호	문서기호
All	4 3

동성애자인권연대

전화: 02-238-0609 (화~일: 오후 4~9시)

팩스: 02-253-2179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시서한 97호 110-600

수 신 인권운동사랑방 총무 최은아 귀하
 받 신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국장 양지용
 일 자 98. 10. 23.
 제 목 정민숙씨건에 대한 협조요청
 매 수 4매

정민숙씨 대법원 판결에 관한 제안

[사건개요]

HIV감염자들의 단체인 '희망나눔터'의 대표인 정민숙씨는 현재 HIV 감염자로서, 87년 4월 국립 보건원은 정씨에 대한 에이즈 항체 검사에서, 양성 반응자로 의심되는 결과를 후속적인 성별 검사 없이 성급하게 에이즈 감염자로 판명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였다.

그후 정씨는 여러 차례 전전하며, 다방 춘집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중 91년 전남 보건환경 연구원과, 93년 제주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HIV 음성 판정이 나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블든, 최초의 양성 판정마저 의심하게 되어 국가에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하였다. 이 소송에서 정씨는 1.2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대법 판결에서는 패소하였다.

1.2심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최초의 HIV 항체 검사 이후 원고(정씨)는 총 12번의 보건 검사를 받은 바. 그 중 3번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 그 중 한 건은 담당자가 검사결과 기록을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위에서 언급한 전남과 제주에서의 결과는 음성 판정이었다.

그런데 보건 당국은 이 음성 판정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원고는 95년 4월 KBS의 [추적60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비로소 두 번에 걸쳐 음성 판정이 나

온 사실을 일개 된 것이다.

양성 판정자가 음성 판정사로 밝힌되는 사례는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보건당국은 당연히 원고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정밀한 재검사를 기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반히 하여, 원고는 최초의 합체검사 결과까지 의심을 품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비록 완전한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최초의 불분명한 검사 결과에 자포자기한 원고가 그 후 천제되지 못한 생활에서 감염되었을 경우도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국가)는 민복된 부상으로 입었을 원고의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판결에 적용된 최종 법리심에서 다음과 같이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내법원의 판결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피해 보상의 근거로 세운 국가 배상법 제2조 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범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음성 판정을 받은 두 번의 검사는 이미 받은 양성 판정에 이은 후속 면역검사가 아니라, 에이즈판별법 제 18조 등에서 에이즈 양성 판정자는 보건당국의 관리범위 안에서 보건법이 취업을 금한 업태에서 종사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소 이전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채, 보건법에 따른 업태종사자들에게 실시하는 통상적 정기선진 대상자로서 받은 판정이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은 음성 판정결과를 검사승 교부행위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진다. 즉 최초 검사에서 음성 판정자는 결론은 양성 판정이 없을 경우 음성 판정사로 확인하는 통상적 방법인 따르나는 근거이며, 따라서 원고가 양성판정자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원고를 양성 판정자로 확인할 방도가 없는 이상, 본고지에 의한 책임성이 없다고 본다.

[제 안]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판결문에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듯이, 에이즈 양성 반응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고, 그러한 관리를 통해 나을 수 있는 판정의 모순점에 대한 재검사 및 재판정 절차나 조치 없이 형식적인 검사와 판정을 되풀이한 관리, 검사, 판정상의 잘못은 부시한 채 범죄 심사에만 몰두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민숙씨 사건을 통해 우리는 정부의 에이즈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확실한 관리체계 수립을 요구합니다.

에이즈를 바이러스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임태부와 동성애자등 특정 집단과 개중반의 질병으로 인식하고 인권과 관리면에서 범죄자 나루듯이 무시하고 죄선을 나하지 않는 정부의 처사는 설마 일부 국가에서 에이즈를 방치한 결과 무서운 재앙으로 나가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에이즈관련 예산은 늘이고, 에이즈를 특징집단의 질병으로 매도하지 말 것이며, 단순한 법의위주의 관리입법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에이즈 예방과 치료에 국가의 전면적인 관심과 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합니다.

정민숙씨 건은 모든 소외받는 사물이 국가 공권력 앞에서 유권당하는 처참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사례입니다. 비록 원고가 일부 에이즈 관련 맴령을 어겼다고 하나, 그것은 그 당시 에이즈 감염 자체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사형선고와 너孥이 인간적, 도덕적 파산자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오는 마지막 선규임을 또 잊어서는 안됩니다.

에이즈는 우리 시대의 모든 인류가 함께 줄어지고 나기야할 질병입니다. 우리는 정민숙씨 건의 해결 여부가 한국의 에이즈 정책과 에이즈 예방운동, HIV 보균자들의 인권의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전기기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인권단체간의 공동대책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기타 사항은 추후 협의)

동·성·애·자·인·권·대

— 2 —

하승합니아. 종 3매 입니아.